

우리나라 農藥產業 발달사(끝)

농약공업협회

상무이사 李 碩 柱

8. 多邊化하는 協會의 機能

협회가 조직과 기능면에서 본격稼動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이후라 할 수 있다.

各種 委任업무가 증가되고 안전사용이 강조되는 한편 시험업무가 협회로 창구일원화되는 등 협회의 기능과 업무자체가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開發試驗 및 許可制度의 變遷

1957년 8월 28일 農藥管理法이 제정된 이후부터 1966년까지는 農村振興廳 植物環境研究所가 주관하여 국가예산으로 개발시험을 실시하는 한편 농약제조 또는 수입업자도 시험비용을 제공하여 委託試驗을 실시하여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1966년 國立農業資材檢査所가 설립되면서부터 시험비용 및 수수료는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하고 자재검사소만이 시험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시험에 필요한 포장차지료와 노무자재는

農藥工業協同組合에서 일괄 징구하여 지불했다. 1973년부터는 각사가 직접 농협창구를 통하여 지불하였다.

그후 농약연구소의 설립으로 개발시험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다시말해 품목개발시험은 농약연구소에서 주관하고 품질관리는 자재검사소에서 주관하는 2元化制度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청시험도 農藥工業協會가 일괄하여 농약연구소에 신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1년은 基金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製造(輸入)業者가 委託試驗과 같이 시험비용을 부담하고 포장차지료와 노무자재는 협회에서 별도 조치함으로써 한해를 넘기기도 했다.

1982년에 와서야 農村振興廳長의 시험비 요청과 홍보예산등이 편성됨으로써 農藥管理基金에 의한 시험·홍보활동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月刊「農藥과 植物保護」誌發刊

식량증산을 위한 생산성향상과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농촌 인력부족은 농약사용량을 증가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은 증산과 농약사용량 증가 사이에서 오용,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月刊「農藥과 植物保護」를 발간하게 되었다.

농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올바르게 안전한 농약사용을 제도하기 위해 발행된 本月刊紙는 1980년 4월 창간호를 내기 시작했고 年120,000部를 無償으로 새마을 지도자, 영농후계자, 일선농촌지도기관, 농협계통조합, 행정기관, 시험연구기관, 농업계 학교등에 배포하고 있으며 통권 72號를 펴내면서 號의 缺號도 없이 國內 唯一의 농약전문지로 부동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농약사용지침서」발간

농약은 정밀화학제품으로 잘못 사용하게 되면 人畜에 대한 피해는 물론 농작물에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약사용자에게 올바른 사용방법을 인식시키도록 1977년부터 해마다「농약사용지침서」를 발간하고 있다.

일선 지도기관, 농협계통조합, 행정기관, 새마을지도자에게 배포되는 본책자는 1982년부터 기

금에 의해 年50,000部씩 발행하여 안전사용계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 各種 弘報物 製作配布

안전사용계도는 점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계도하기보다는 映画, 슬라이드, 標語, 팜플렛, 각종 교육교재등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안전사용을 통한 식량증산시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海外市場 開拓을 爲한 努力

국내 농약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시장개척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미력이나마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1974년 4월에는 「印尼」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박람회에 무역진흥공사를 통해 農藥見本 15點을 출품했고, 1975년 12월에는 「이란」에 수출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여 농수산부에 통보하여 수출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977년 7월에는 全經聯 主催 「農藥의 國際競爭力強化를 위한 協議會」에 참석한후 本 협회내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도 했다.

또 1983년 1월 25일에는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와 연계하여 「케냐」등 아프리카지역의 農藥産業進出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1983년 1월 25일에도 「한국농약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戰略토론회」를 협회주관으로 개최하기도 했다.

○ 統計業務의 重要性

본협회의 주요업무 중 통계업무를 빼놓을 수 없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6년부터 每年 「농약년보」를 발간하여 각종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 농약년보는 전농약의 출하 및 생산뿐만아니라 품목별, 제제별 공급 및 소비상황, 수입·수출상황등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편집해 놓고 있다.

○ 韓·中·日 姊妹結緣

우리나라 농약산업 및 아시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아시아

의 농업선진국인 한국, 日本, 中華民國등이 友誼를 더욱 돈독히 하고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3국농약공업협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민간기업 차원에서 공동노력을 취하고 있다.

3國協會자매결연은 1982년 12월 臺灣區農藥工業同業公會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3國會長이 합의한 바에 따라 1983년 6월 6일 日本 東京에서 「자매결연조인식」 및 「第1次 農藥工業協會會議」가 개최되었다.

〈參席人員：日本 13名, 臺灣 10名, 韓國 8名〉

이어 1984년 9월 17일에는 3國의 交代(巡回)開催합의에 따라 서울에서 第2次會議가 열렸으며 정보교환, 무역불균형개선, 상표보호등의 의제를 가지고 동시통역으로 개최되었다.

〈參席人員：韓國 20名, 日本 12名, 臺灣 14名〉

1985년 11월 7일에 臺灣에서 第3차 회의가 열려 3국간의 공동관심사와 농약산업 발전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했으며 3國간의 友誼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參席人員：臺灣 38名, 韓國 20名, 日本 19名〉

○對農民 支援活動

농약사업은 대농민사업이기 때문에 태풍피해지역이나 농촌새마을청소년회등의 지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1979년 7월 CDP-2등 고성능방제기구 6대(2,000만원상당)를 日本으로부터 수입하여 6개도에 지원한 것을 계기로 1980년 10월에는 농촌새마을청소년사업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1,000만원상당의 농약을 기증하기도 했다.

또 1981년 5월에는 農村幼兒院에 라디오겸용 녹음기 300대(11,100천원상당)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1981년 南部지역을 강타한 태풍“애그니스”號에 의해 피해를 입은 全南, 慶南地方에 1억 5,000만원상당의 농약을 KBS를 통해 지원함으로써 후기병충해 방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기도 했다.

○自然保護를 爲한

빈병수집 활동

빈병수집은 1978년까지는 유상수집으로 해왔으나 약액누출 등 재활용의 문제점이 많아 1979년부터는 무상수집체제로 바꾸었다.

무상수집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사용자가 스스로 안전하게 수집하도록 인식제고를 위해 각종 홍보활동을 展開하고 있으며 1983년부터는 효율적 추진을 위해 빈병회수용 마대를 공급하고 있다.

○農藥安全使用 調査委員會 設置運營

農藥管理法 第18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사용으로 농작물에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그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984년 4월 20일 “農藥安全使用 調査委員會”를 설치하였다.

농수산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조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약공업협회장이 위촉하는 사계권위학자, 전문가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農藥安全使用을 爲한 用役事業

농약안전사용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잔류농약과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평가를 위해 용역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982년에는 「殘留農藥과 環境汚染에 關한 調査評價」용역을 韓

國環境農學會에 의뢰하였고 「수도안전다수확을 위한 병해충의 종합방제와 농약의 효율적 및 안전사용관리에 관한 研究」를 서울大學校 農業開發研究所에 의뢰하기도 했다.

또 1984년에는 수도용 농약에 의한 약해발생소지 및 유발요인에 대한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약해발생 관련요인을 구명하기 위한 「수도용농약에 의한 藥害發生 要因研究」를 서울大學校 農業開發研究所에 용역 의뢰하여 보고서를 펴낸 바 있다.

○綜合防除 示範圖 運營

병해충 발생상습지를 중점관리하여 방제효과를 높이는 한편 효과적인 방제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발생상습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所要農藥全量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綜合防除示範圖를 운영하고 있다.

9. 政府委任業務의 效率化 推進

○農藥管理基金의 運用

농약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연도별 시범포 설치내역

〈단위 : ha〉

	1981	1982	1983	1984	1985
도 열 병	233	120.88	57.7	67.6	77.2
흰빛잎마름병	86.3	40	25.55	11(5)	5.2
計	309.3	160.88	83.25	83.6	82.4

(5) : 저온성 해충

의거 설치된 농약관리기금은 同法 施行規則 第23條의 規定에 따라 81년부터 농약공업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 基金의 用途는 첫째 品目告示를 위한 試驗費用, 둘째 農藥의 안전사용 홍보, 셋째 기금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基金의 부과방법은 농약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고시된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매년 품목별로 판매한 금액을 기준하여 회사별, 품목별로 면제기준을 적용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은 협회 이사회와 總會를 거쳐 익년도 회계년도개시 30일전에 農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기

업회계원칙에 따라 계리하도록 되어있다.

○農藥原資材 所要量 證明書發給

關稅法 第28條의 4및 동시행규칙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재무부 고시 第830號(1978.12.28) 第4項의 稅番(CCN Number)에 해당하는 품목을 農水産部長官이 확인한 물품에 대하여 발급해주고 있다.

○농약포장지 표기기준확인

농약의 포장지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그 표기내용이 명시되

◇연도별 발급실적

연 도 별	발급건수	연 도 별	발급건수
1979	899	1982	1,264
1980	1,346	1983	1,640
1981	1,267	1984	1,648

어 있는데 신속하고 공정한 확인으로 적기생산을 가능케하고 있으며 연평균 540건을 처리하고 있다.

○농약선전문 사전승인

농약은 독성을 지닌 정밀화학 제품으로 잘못 사용하면 人畜에도 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각종 선전문에도 과대, 허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1981년 자재검사 소로부터 선전문에 대한 사전승인을 위임받아 「사전승인요령」을 제정하여 각종 선전문을 승인해주고 있다.

◇시험용농약 추천 건수

	1981	1982	1983	1984	1985
농 약 통 관 추 천 건 수	192	329 (경유: 239) (추천: 90)	376	359	354

* 協會추천 : 1982. 8. 1

○시험용농약 통관추천

회원사에서 협회를 경유하여 수시로 제출하기 때문에 업무의 신속성은 물론 효율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제조처방서 발급신청

農村振興廳告示 第26號(농약의 시험기준과 방법) 第8條의 규정에 의해 협회를 경유하여 농약연구소장에게 제조처방서를 발급신청하고 있다.

◇제조처방서 발급신청 건수

년도	1981	1982	1983	1984	1985
건수		76	88	93	60

질서와 화합으로
 밝아오는 86제전

<별표> 약제별·연도별 농약생산출하실황

※ 단위 : 장문량(kg)

연도별 약제별	'57		'58		'59		'60		'61		'62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살균제	859,766	889,436	791,156	638,942	899,286	751,234	1,438,759	1,609,340	1,546,832	1,572,646	277,918	381,376
살충제	510,732	486,365	350,650	340,387	161,765	166,304	171,753	193,308	126,428	117,950	290,500	320,333
제초제	18,144	13,426	16,235	16,452	7,772	7,168	2,800	3,696	—	3,844	3,830	3,811
기타제	500	410	523	481	317	330	900	1,000	1,649	1,383	6,310	6,022
합 계	1,389,142	1,339,637	1,158,564	996,262	1,069,140	925,036	1,614,212	1,807,344	1,673,909	1,695,823	578,558	712,142

연도별 약제별	'63		'64		'65		'66		'67		'68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살균제	871,027	714,169	263,970	273,286	524,475	536,868	376,072	315,087	290,806	198,023	483,703	410,333
살충제	724,423	724,503	802,604	697,272	825,827	716,702	789,058	653,117	1,168,625	1,118,376	1,468,162	1,295,194
제초제	26,696	26,556	165,712	16,564	50,542	14,497	113,167	99,180	204,213	191,769	307,251	276,722
기타제	30,989	28,541	100,698	128,457	17,312	19,292	40,302	35,280	8,841	10,970	22,398	18,833
합 계	1,653,135	1,493,769	1,332,984	1,115,519	1,418,156	1,287,559	1,318,599	1,102,664	1,672,485	1,519,138	2,291,514	2,001,082

연도별 약제별	'69		'70		'71		'72		'73		'74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생산	출하
살균제	953,139	734,874	857,566	827,733	707,013	692,154	1,048,324	1,030,704	992,701	1,044,207	721,153	687,389
살충제	1,552,948	1,316,454	1,729,615	1,684,673	2,121,721	2,060,631	3,325,000	3,252,755	4,610,643	4,343,468	3,989,830	3,900,902
제초제	580,637	383,072	1,326,102	1,122,902	1,273,051	1,364,851	978,496	951,360	1,264,902	1,169,922	1,221,334	1,154,951
기타제	22,983	24,577	111,776	95,341	141,588	145,397	112,371	117,300	190,555	170,999	98,496	100,973
합 계	3,109,707	2,468,977	4,025,059	3,730,649	4,243,373	4,263,033	5,464,191	5,352,119	7,058,801	6,728,596	6,030,813	5,844,815

연도별 약세별	'75		'76		'77		'78		'79		'80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실공계	1,295,611	1,232,147	1,531,415	1,516,212	1,308,613	1,337,035	2,006,905	2,184,345	3,769,386	3,788,382	5,591,146	5,448,048
실총계	5,363,164	5,170,563	6,853,176	6,709,774	5,782,448	5,419,870	5,974,454	6,754,935	7,814,066	7,619,586	7,309,516	6,406,960
제조계	1,904,651	2,139,229	2,159,151	2,012,035	2,245,561	2,251,768	2,258,586	2,203,904	2,844,715	2,709,124	3,522,994	3,373,674
기타계	78,289	76,904	94,088	100,081	107,207	108,656	159,903	165,643	337,408	337,103	1,007,730	903,713
합 계	8,641,715	8,618,843	10,637,830	10,338,102	9,443,829	9,117,329	10,399,848	11,308,827	14,765,575	14,454,195	17,431,386	16,132,395

연도별 약세별	'81		'82		'83		'84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실공계	6,403,904	6,018,501	4,207,547	4,274,959	3,750,289	3,958,868	5,181,008	5,161,152
실총계	5,296,947	5,885,070	5,655,088	5,922,833	6,672,095	6,681,086	6,563,396	6,506,482
제조계	3,473,239	3,270,442	2,651,100	3,144,290	3,935,922	3,911,836	4,162,559	3,856,600
기타계	857,824	885,114	1,096,129	1,083,803	1,002,134	1,052,002	1,177,198	1,164,099
합 계	16,031,914	16,069,127	13,609,864	14,425,885	15,360,440	15,603,792	17,084,161	16,688,333